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
제234회 제2차 정례회 (2019. 12. 6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최국모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19-144
- 나. 제 출 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19년 11월 15일(금)
- 라. 회부일자: 2019년 11월 18일(월)

2. 제출사유

2019. 8. 1. 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고, 현행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2019.8.1. 자 조직개편 관련 주관국(부서) 명칭 변경(별표)
- 나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, 삭제, 정정(별표)
- 다. 현행 법령에 맞춰 근거 법령 조항 정비 등(별표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1항(사무의 위임 등)
- 나. 입법예고: 생략(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2019년 8월 1일자 마포구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주관국(부서) 명칭을 변경하여 안전행정국을 행정관리국으로, 어르신복지장애인과를 노인장애인과로,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를 관광일자리국 지역경제과로 하고자 하며,

- 또한,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, 삭제, 정정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,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, 약국에 관한 사무가 신설되고 기초노령연금 수급 신청에 관한 사무, 예방접종에 관한 사무가 정정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위임사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, 소별 개정내용은 붙임 개정 조례안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관계 법령 및 공익을 해치는 요소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